결의보고서

국제로타리
2010 규정심의회

규정심의회

2010년 4월 25-30일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

ROTARY INTERNATIONAL®

KO

국제로타리 2010 규정심의회 결의 보고서

수신: 로타리클럽

RI 규정심의회가 2010 년 4 월 25-30 일,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개최되었습니다. RI 세칙 제 8.140.2. 항에 따라, 규정심의회에서 채택된 66 개의 입법안 결의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규정심의회는 128 개의 제정안(RI 정관 개정을 위한 제안)과 92 개의 결의안(RI 정관 개정이 목적이 아닌 제안) 등 총 220 개의 입법안을 심의하였으며, 이 중 47 개의 제정안과 19 개의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되지 않은 입법안들 가운데 3 개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RI 이사회에 다시 회부되었으며, 101 개는 부결되었고, 50 개는 철회되었거나, 철회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채택된 66 개의 입법안 가운데 51 개는 수정없이, 그리고 15 개는 수정한 후에 채택되었습니다. 수정한 후 채택된 입법안들에는 번호 옆에 (*) 표시를 하였으며, 입법안의 최종적인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제목이 수정된 것들도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입법안은 심의회 제출을 위해 사용된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첨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에는 밑줄로, 그리고 삭제된 내용은 가운데 줄로 표시함으로써 현행 RI 세칙에 대한 변경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정심의회 결의 보고서를 검토하실 때, 제정안과 결의안들이 규정심의회에서 채택된 그대로 수록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각 입법안들은 현행 정관 문서 개정을 목적으로 기안된 것으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항들은 2010 절차 요람 제작 시 최종 정리될 것입니다.

본 보고서 말미에 "규정심의회 결의에 대한 반대 의사 제출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본 책자의 각 항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세칙 제 8.140.3 항 규정에 따라, 채택된 어떤 제정안이나 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경우에 본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작성하신 양식은 **2010 년 8 월 30 일까지** 에반스톤에 소재한 RI 세계본부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본 양식을 사용해 어느 특정 안건에 대한 반대 의사가 규정된 수만큼 제출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회 결정은 정지됩니다. 이 경우, RI 세칙 제 8.140.5., 8.140.6., 그리고 8.140.7.항에 따라 우편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RI 사무총장은 1 개월 이내에 투표 용지를 준비하여 각 클럽으로 우송, 효력이 정지된 안건에 대한 채택 여부를 묻게 됩니다.

규정심의회 결의 사항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만, “규정심의회 결의에 대한 반대 의사 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 클럽이 2010 규정심의회의 결의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행동도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d Futa

에드 후타
RI 사무총장

결의 보고서
순서

입법안 번호	제목	페이지
10-01	클럽 연수 및 리더십 위원회 설치	1
10-05	새모델 클럽 파일럿 프로젝트의 개념을 지지하는 입법안 제출	1
10-06*	지구 당 e-클럽 1 개를 지정	2
10-07	클럽 명칭 및 소재지 변경 개정안은 지구총재에게 사전 통보	6
10-09	재산권 상실 조항의 개정	7
10-11	직전 회장을 임원에 포함	7
10-21	출석 면제 조항 개정	7
10-23*	출석 면제 조항 수정	8
10-27	출석 기록 산출 조항 수정	8
10-40	클럽 회원 자격에 성적인 취향 배제	8
10-41	장애인들의 로타리클럽 가입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채택할 것	9
10-50	새로운 멤버십(위성클럽 회원)의 제안	9
10-52	이적 로타리안 및 전 로타리안의 클럽 가입 규정 개정	10
10-53*	이적 로타리안 또는 전 로타리안들에 대한 규정 개정	10
10-56*	회원 자격 종결 조항 개정	11
10-59	각 지구는 적극적으로 클럽 홍보 활동 참여할 것	12
10-61*	지구 협의회 및 차기회장 연수회 개최 시기 변경	12
10-63	지구대회 대리인 규정의 개정	13

규정심의회에서 수정을 거친 후 채택된 입법안에는(*) 표가 있음.

10-65* 지구총재는 신입회원 연수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할 것 13

10-69 지뢰 희생자 구호 사업을 RI 및 로타리재단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포함 14

10-70 지뢰 피해자 지원 활동을 RI 와 로타리재단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것 15

10-71 로타리 평화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창설 16

10-73 세계평화를 위한 로타리안 선언문 채택 17

10-75 재해 지역의 신속한 구호를 위해 셀터박스의 사용 확대 방안 개발 17

10-76 환경 문제 인식 강화 18

10-78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요청 18

10-87* 4 대 봉사 부문에 5 번째 부문 추가: 신세대 봉사. 19

10-94 얼리액트(EarlyAct) 클럽에 대한 공식 승인 요청 19

10-102* 인너휠을 로타리의 소중한 봉사 파트너로 인정 20

10-110 로타리안의 파트너에게 재단 프로그램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말 것 20

10-124 로타리재단 관리위원회 선출 조항 개정 21

10-125 관리위원 임명 일정 변경 21

10-127* 회원 1 인당 회비 인상 22

10-138 RI 이사에게 지출된 경비를 RI 연차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23

10-139 모든 관리위원들의 지출 명세서를 관리위원회 보고서에 기재할 것 23

10-140 RI 회장 지명위원회 위원 수 축소 24

10-142 이사의 자격 요건을 변경할 것 24

10-149 RIBI 존의 이사 및 회장 지명위원회 절차 개정 25

10-151* 총재 임무 변경 26

10-154 총재 피지명자 선출 조항 개정 27

10-155 총재 피지명자 도전 후보자 조항 개정 28

10-157 지구총재 도전 후보 규정 개정 29

10-159 우편 투표 서식의 개정 29

10-161 총재 특별 선거에 관한 조항을 개정할 것 30

10-162 임원 지명 조항 개정 30

10-164 선거 이의 제기 검토 절차 31

10-164A* 선거 이의 제기 조항 개정 31

10-165 로타리 제 2 모토 수정 32

10-167* 지구 경계 변경 조항 개정 33

10-168 로타리재단 스튜어드십을 위반한 클럽의 자격을 정지 또는 종결할 것 33

10-169 자격 정지 클럽에 대한 조항 명시 34

10-172 회계 감사 위원회 조항 수정 34

10-173 전략 계획 위원회 조항 개정 35

10-176* 인터랙트 위원회를 상임 위원회로 개설할 것 36

10-182 '1923 년 사회봉사 성명서'의 첫 번째 원칙을 봉사 철학의 정의로 규정 36

10-183 공식 잡지 인터넷 구독 승인 37

10-186 공식잡지의 공동 구독을 인정할 것 37

10-190* RI 세칙에 여행 규정 조항 신설 38

10-191 콤리 뱅크에 RI 역대 회장 문서를 보관할 것 39

10-198 규정심의회에 최대 3 명의 특별 의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RI 회장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 39

10-203* 입법안 제안자가 입법안의 취지 및 효과를 설명할 것 40

10-205 규정심의회 결정 정지 규정을 개정할 것 41

10-208 대의원의 규정심의회 참가 회수를 3 회로 제한 41

10-210 지구대회 대의원 선출 규정 수정 41

10-211 규정심의회 대의원 지명 조항 개정 42

10-217 RI 국제대회 대의원 좌석 규정 개정 42

채택된 입법안 찬반 투표 결과 44

규정심의회 결의에 대한 반대 의사 제출 양식 45

채택된 결의안 10-01

클럽 연수 및 리더십 위원회 설치

많은 클럽들이 회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연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경력에 관계없이 너무나 많은 로타리안들이 RI 및 로타리재단의 목표, 규정, 그리고 자원들을 잘 모르고 있다. 더욱이, 많은 로타리안들이 클럽 회장과 같은 임원으로 취임하기 전에 자신의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클럽 리더십 플랜 상임위원회에 '연수 및 리더십 위원회'를 추가시킬 것을 결의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10-05

새모델 클럽 파일럿 프로젝트의 개념을 지지하는 입법안 제출 요청

RI 이사회는 "로타리 새모델 클럽" 파일럿 프로젝트(2001-2004)에 참여할 로타리클럽들을 선정하여 새모델 클럽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시켰으며,

또한, 2001 규정심의회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제정안을 채택하였었다.

'새모델 클럽'은 로타리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RI 이사회도 참여 클럽들이 취한 조치들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었다.

또한, RI 이사회는 이 파일럿 프로젝트로부터 더 많은 경험을 얻기 위해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 3 년 연장 실시하기 위한 제정안을 2004 규정심의회에 제안하였으며, 동 규정심의회도 이를 승인했었다.

그러나,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가 2005 년 말에 이사회에 제출되었지만, 그 내용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클럽들에게만 제공되었을 뿐 지구총재나 규정심의회 대의원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그 보고서에 대해 RI 이사회가 취한 반응은 파일럿 프로젝트 3 년 연장 실시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모델 클럽 파일럿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 원래의 취지를 지지할 수 있는 입법안을 다음 규정심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RI 이사회에 촉구하고자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06*

지구 당 e-클럽 1개를 지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183 페이지

제 1 조 정의
국제로타리 세칙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문맥상 분명히 다른 정의가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 이사회: RI 이사회.
2) 클럽: 로타리클럽.
3) 정관 문서: RI 정관 및 세칙 그리고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4) e-클럽: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만나는 로타리클럽.
5) 지구총재: 로타리지구의 총재.
~~5~~6) 회원: 명예회원 이외의 로타리클럽의 회원.
~~6~~7) RI: 국제로타리.
~~7~~8) RIBI: 영국 및 아일랜드에 있는 RI 의 관리 구역 단위.
~~8~~9) 연도: 7 월 1 일에 시작되는 12 개월의 기간.

제 2 조 국제로타리 회원

2.010. RI 회원 가입 신청
RI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클럽은 이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 제출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입회비를 동봉하여야 한다. 입회비는 미화나 클럽 소재 국가의 통화로 납부한다. 회원 자격은 이사회가 해당 신청서를 승인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10.1. e-클럽
이사회는 1 개 지구당 1 개의 e-클럽을 지정한다. 단, 2 개는 지정하지 않는다.

2.020. 클럽 소재지
클럽은 신생클럽 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업분류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결성될 수 있다. 클럽은 1 개 이상의 클럽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동일한 지역에서도 결성될 수 있다.

2.030. e-클럽의 소재지
e-클럽의 소재지는 전세계이거나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추후 조항들의 번호는 조정된다)

제 15 조 (절차요람 223 페이지)

제 15 조 지구

15.010. 지구 창설

이사회는 클럽들을 지구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회장은 그러한 지구의 목록과 그 경계 구분을 발표하여야 한다. 그러한 결정은 이사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지구 경계 구분에 관계없이, 지구당 1 개 e-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30 개 미만의 클럽이나 1,000 명 미만의 로타리안을 보유한 지구의 경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0 개 이상의 클럽이나 1,000 명 이상의 로타리안을 보유한 지구는 해당 지구에 소속되어 있는 클럽들의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 지구 경계를 변경할 수 없다. 이사회는 관련 지구의 총재 및 소속 클럽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이들에게 제안된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준 후에 지구 경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사회는 지구 경계 설정에 지역 분포, 지구 성장의 잠재력, 문화, 경제, 언어, 기타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5.010.1. 동일 지역에 있는 클럽
같은 도시나 자치 지구 또는 교외 지역에 여러 개의 클럽들이 공존하는 경우, 이들 클럽들의 과반수 승인 없이는 그 클럽들을 서로 다른 지구에 편성할 수 없다. 동일 지역에 있는 클럽들은 동일 지구에 편성될 권리를 갖는다. 단, e-클럽의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그러한 권리는 해당 클럽들의 과반수가 이사회에 청원함으로써 행사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청원 접수 후 2 년 이내에 동일 지역에 공존하는 모든 클럽들을 동일 지구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 20 조 (절차요람 237 페이지)

제 20 조 공식잡지

20.030. 잡지 구독

20.030.1. 구독 의무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국가 클럽 회원들과 e-클럽 회원들은 RI 공식잡지나 이사회가 승인한 지역 로타리 잡지 중 1 부를 의무적으로 구독하여야 한다. 회원들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계속 정기 구독을 하여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국가 클럽 회원들은 RI 공식잡지나 이사회가 승인한 지역 로타리 잡지 중 1 부를 의무적으로 구독하여야 한다. 회원들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계속 정기 구독을 하여야 한다.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 2 조 (절차요람 243 페이지)

제 2 조 명칭 (1 개 선택)
본 조직의 명칭은_____
_____ 로타리클럽이라고 한다.
(국제로타리 회원)

혹은

본 조직의 명칭은 _____
_____ 로타리 e-클럽이라고 한다.
(국제로타리 회원)

제 3 조 (절차요람 243 페이지)

제 3 조 클럽 소재지 (1 개 선택)
본 클럽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_____
_____
또는
본 e-클럽의 소재지는 전세계 지역으로서, 월드 와이드 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웹주소: www. _____
_____

제 6 조 (절차요람 244 페이지)

(제 6 조 1 개를 선택)

제 6 조 회합
제1항 주회
(가) 날짜 및 시간. 본 클럽은 매주 1 회, 세칙에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주회를 개최한다.
(나) 회합의 변경.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회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주회 전날까지 중의 다른 날짜로, 또는 주회 날짜 중의 다른 시간 또는 다른 장소로 변경할 수 있다.
(다) 취소. 만일 주회 날짜가 일반 공휴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거나 클럽 회원이 사망했거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전염병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클럽 회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력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는 주회를 취소할 수 있다. 본 클럽의 이사회는, 재량에 의해, 본 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한 로타리 연도 중에 4 회까지 주회를 취소할 수 있다.

제 2 항 연차 총회. 클럽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연차 총회는 클럽 세칙의 규정에 따라 매년 12 월 31 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제 6 조 회합 (e-클럽)

제 1 항 주회
(가) 날짜 및 시간. 본 클럽은 매주 1 회, 세칙에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클럽 웹 사이트 인터액티브 활동으로 클럽 주회를 개최한다. 웹사이트 인터액티브 활동을 클럽 주회로 간주한다.

(나) 회합의 변경.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회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주회 전날까지 중의 다른 날짜로, 또는 주회 날짜 중의 다른 시간 또는 다른 장소로 변경할 수 있다.

(다) 취소. 만일 주회 날짜가 일반 공휴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거나 클럽 회원이 사망했거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전염병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클럽 회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력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는 주회를 취소할 수 있다. 본 클럽의 이사회는, 재량에 의해, 본 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한 로타리 연도 중에 4 회까지 주회를 취소할 수 있다.

제 2 항 연차 총회. 클럽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연차 총회는 클럽 세칙의 규정에 따라 매년 12 월 31 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제 9 조 (절차요람 246 페이지)

제 9 조 출석

(아래의 제 1 항 중에서 1 개 선택)

제 1 항 일반조항.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주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회원은 주회 개최 시간의 최소한 60 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거나 또는 출석 중에 갑작스러운 일로 호출되어 차후에 그러한 행동이 합리적이었다고 이사회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또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출석보전(出席補塡)을 할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 항 (e-클럽) 일반조항.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주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클럽 웹사이트 인터액티브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으로 간주된다. 또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출석보전을 할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 회합 전후 14 일. 해당 회합의 정규 시간 전후 14 일 이내에, 해당 회원이

(1) 클럽 또는 가클럽의 주회 시간의 60 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거나,

(2) 로타랙트클럽 또는 인터랙트클럽, 로타리 지역사회 봉사단, 로타리 동호회 또는 가(假)로타랙트클럽이나 가인터랙트클럽, 가로타리 지역사회봉사단, 가로타리동호회에 참석하거나,

(3) 로타리 국제대회, 규정심의회, 국제협의회, 국제로타리 이사회나 이사회를 대표하는 국제로타리 회장이 승인하여 개최되는 전/현/차기 임원 연수회 또는 기타 회의, 로타리 지역대회, 국제로타리 위원회, 로타리 지구대회, 로타리 지구협의회, 국제로타리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개최된 지구 모임, 지구총재의 지시에 따라 개최되는 지구 임원회나 정식으로 공고된 로타리클럽의 도시간 합동주회 등에 참석했거나,

(4) 타 클럽 주회에 출석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출석했으나 해당 클럽이 그 시간과 장소에서 회합을 갖지 않았거나,

(5) 클럽의 봉사 프로젝트나 클럽이 스폰서하는 지역사회 행사 또는 이사회가 승인한 회합에 참석하거나
(6) 이사회에 출석하거나, 이사회가 승인한 것으로 해당 회원의 소속 봉사위원회 회합에 참석하는 경우,
(7) 클럽 웹사이트에서 30 분 이상 회원들간의 상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회원이 14 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 본 조항에서 정한 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회원은 여행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외국에서 개최되는 회합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출석은 회원이 해외 여행을 하는 동안 국내 소속 클럽의 주회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하게 출석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회합 개최 시. 클럽의 주회가 개최되는 시간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출석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본 항 (가) (3)에 명시된 한 회합에 참석하기 위하여 여행 중이거나,
(2) 국제로타리의 임원이나 위원회 위원 또는 로타리재단의 관리위원으로 로타리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3) 지구총재의 특별 대표로서 신생 클럽 결성을 위한 로타리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4) 국제로타리의 피고용인으로 로타리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5) 출석보전이 전혀 불가능한 먼 지역에서 지구가 스폰서하거나 국제로타리나 로타리재단이 스폰서하는 봉사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거나,
(6) 본 클럽의 이사회가 승인한 로타리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 본 클럽의 주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07

클럽 명칭 및 소재지 변경 개정안은 지구총재에게 사전 통보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252 페이지)

제 19 조 개정

제2항 제 2 조 및 제 3 조의 개정. 본 정관 제 2 조 (명칭) 및 제 3 조 (클럽 소재지)는, 본 클럽의 정족수가 출석한 주회에서 모든 투표 회원의 3 분의 2 의 찬성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단, 개정안은 적어도 이것을 토의할 주회 개최 10 일 전에 각 회원에게 그리고 지구총재에게 우편으로 통고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국제로타리 이사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을 때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지구총재는 개정안에 대해 RI 이사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09

재산권 상실 조항의 개정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250 페이지)

제 12 조 회원 자격의 존속 기간

제 9 항 재산권의 상실. 클럽 가입 시 지역법에 따라 클럽의 기금 혹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으나, 어떤 이유로든지 클럽의 회원 자격이 종결된 자는 본 클럽에 속한 모든 기금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1

직전 회장을 임원에 포함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47 페이지)

제 10 조 이사 및 임원

제 4 항 임원.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 직전 회장, 차기회장, 1 명 또는 수명의 부회장, 총무, 재무 및 사찰이다. 회장과 차기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의 이사가 되며, 총무, 재무 및 사찰은 클럽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원 또는 일부가 이사가 될 수도 있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21

출석 면제 조항 개정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247 페이지)

제 9 조 출석

제 3 항 — 출석 면제. 다음의 경우에 출석이 면제된다.

(a) 이사회가 인정하는 조건과 여건에 따른 결석. 이사회는 적절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의 출석을 면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제 혜택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23*

출석 면제 조항 수정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247 페이지)

제 9 조 출석

제 3 항 출석 면제.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이 면제된다.

(나) 회원 연령이 65 세 이상이거나, 회원 연령과 1 개 또는 그 이상의 클럽에서의 회원 연수를 합한 수가 85 년 이상이며, 회원이 출석 면제 희망 요청서를 클럽 총무에게 제출하여 이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해당 회원의 출석을 면제할 수 있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27

출석 기록 산출 조항 수정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247 페이지)

제 9 조 출석

제 3 항 출석 면제.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이 면제된다.

(가) 이사회가 인정하는 조건과 여건에 따른 결석. 이사회는 적절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의 출석을 면제할 수 있다.

(나) 회원 연령과 1 개 또는 그 이상의 클럽에서의 회원 연수를 합한 수가 85 년 이상이며, 회원이 출석 면제 희망 요청서를 클럽 총무에게 제출하여 이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해당 회원의 출석을 면제할 수 있다.

제 4 항 RI 임원의 결석. RI 의 현직 임원의 결석은 용납된다.

제 5 항 출석기록. 본 조 3(나)항 및 4 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면제받은 회원~~은~~이 주회에 출석한 경우 그 회원의 출석은 클럽의 출석률~~을~~ 계산~~하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에 포함시켜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40

클럽 회원 자격에 성적인 취향 배제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186 페이지)

제 4 조 클럽 회원

4.070. 회원 자격 제한
본 세칙 제 2.030.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클럽은, RI 회원 가입 일자에 관계없이,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국적, 또는 성적인 취향을 기준으로 클럽 회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RI 정관 또는 세칙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원 자격 조건을 부과하는 규정을 클럽 정관이나 기타 어디에도 둘 수 없다. 본 조항에 위배되는 클럽 정관 규정이나 기타의 조건 부과는 모두 무효이고 효력을 갖지 못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10-41

장애인들의 로타리클럽 가입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채택할 것

장애인들도 로타리클럽 회원이 될 수 있으므로, 로타리클럽은 이들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회합 장소는 장애인 출입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방해물이 없는 공간이어야 한다. 또한, 청각 장애인들이 회의 진행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화 번역기나 보청기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국제로타리가 아직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추세에 맞지 않는다. 많은 장애인들이 로타리클럽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국제로타리는 이들이 로타리클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로타리클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정책을 고려해 줄 것을 결의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10-50

새로운 멤버십(위성클럽 회원)의 제안

신생클럽의 창립을 통하여 회원증강을 이룩하는 것은 RI 의 중요한 목표이다. 만약 로타리클럽에 위성클럽의 결성을 허용한다면 회원증강에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클럽은 가(假)클럽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나, 위성 클럽의 회원들은 자격을 갖추고 창립을 신청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스폰서 클럽 회원이 되는 것이 다르다.
본 결의안은 국제로타리 이사회가 차기 규정심의회에 위성클럽의 창립을 허용하는 입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52

이적 로타리안 및 전 로타리안의 클럽 가입 규정 개정

국제로타리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185-186 페이지)

제 4 조 클럽 회원

4.030. 이적 로타리안 또는 전 로타리안
이전 클럽의 소재지 또는 그 인근 지역에서 종전에 보유한 직업분류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됨으로써 회원 자격이 종결되고 있거나 종결된 이적 또는 전 회원을 정회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정회원으로 추천될 수 있는 이적 또는 전 회원은 전 클럽에 의해서도 추천될 수 있다. 클럽의 직업분류 제한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적 회원 또는 전 회원의 직업분류로 인해 클럽의 정회원 선출이 배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에 따라 이적 로타리안 또는 전 로타리안을 정회원으로 입회시키기 위해서는 이전 소속 클럽의 이사회로부터 그 클럽의 회원이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178 페이지)

제 7 조 회원

제 4 항 이적 또는 전 로타리안. 이전 클럽의 지역 내에서 보유했던 사업 또는 전문 직업분류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음으로써 전 클럽에서 회원 자격이 종결되어 가거나 종결된 이적 또는 전 로타리안은 정회원으로 추천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정회원으로 추천되는 이적 또는 전 로타리안은 전 클럽에 의해서도 추천될 수 있다. 클럽의 직업분류 제한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적 회원 또는 전 회원의 직업분류로 인해 클럽의 정회원 선출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본 조항에 따라 이적 로타리안 또는 전 로타리안을 정회원으로 입회시키기 위해서는 이전 소속 클럽의 이사회로부터 그 클럽의 회원이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53*

이적 로타리안 또는 전 로타리안들에 대한 규정 개정

국제로타리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185)

제 4 조 클럽 회원

4.030. 이적 로타리안 또는 전 로타리안
이전 클럽의 소재지 또는 그 인근 지역에서 보유한 직업분류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됨으로써 회원 자격이 종결되고 있거나 종결된 이적 또는 전 회원을 정회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정회원으로 추천될 수 있는 이적 또는 전 회원은 전 클럽에 의해서도 추천될 수 있다. 클럽의 직업분류 제한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적 회원 또는 전 회원의 직업분류로 인해 클럽의 정회원 선출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전 회원을 입회시키려는 클럽은 전 회원의 이전 소속 클럽으로부터 모든 채무가 납입되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게 할 것을 권장한다.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244 페이지)

제 7 조 회원

제 4 항 이적 로타리안 또는 전 로타리안

(가) 잠정 회원. 이전 클럽의 지역 내에서 보유했던 사업 또는 전문 직업분류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음으로써 전 클럽에서 회원 자격이 종결되어 가거나 종결된 이적 또는 전 로타리안은 정회원으로 추천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정회원으로 추천되는 이적 또는 전 로타리안은 전 클럽에 의해서도 추천될 수 있다. 클럽의 직업분류 제한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적 회원 또는 전 회원의 직업분류로 인해 클럽의 정회원 선출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RI 의 회원 자격이 종결된 전 회원이거나 이주 이외의 다른 사유로 클럽을 사임한 전 회원은 이전 클럽에서의 회원 자격이 종결된 후 90 일 이후부터 클럽에 재가입할 수 있다. 또한 클럽은 전 회원의 클럽으로부터 모든 채무가 납입되었다는 증명 서류를 제공해 줄 것을 잠정 회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나) 전 회원. 클럽은 조항 (가)에 의거하여 다른 로타리클럽으로부터 전 회원의 채무 관련 증명 서류를 요청 받는 경우, 전 회원에 대한 존중과 함께 이를 제공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56*

회원 자격 종결 조항 개정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248 페이지)

제 12 조 회원 자격의 존속 기간

제 5 항 자격 종결 – 기타 원인

(가) 정당한 이유. 본 클럽의 회원 자격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또는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로 해당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사회는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 7 조 1 항과, 네 가지 표준 그리고 로타리클럽

회원으로서의 높은 윤리적 기준에 의거하여 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10-59

각 지구는 적극적으로 클럽 홍보 활동 참여할 것

로타리는 최근 공공 이미지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이에 로타리는 홍보를 클럽의 새로운 주요 기능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국제로타리 이사회에 다음 사항들을 요청한다.

가) 로타리 지구와 지구 클럽 홍보 위원회는 로타리 홍보 활동을 실천하는 로타리클럽 홍보 활동의 전략적 계획, 관리, 기획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나) 2 개 이상의 지구의 지역 또는 전국 미디어가 관계되는 경우, 효율적인 인쇄 및 온라인 로타리 뉴스 보도를 위해 해당 지구가 공동으로 책임을 갖는다.

다) 지구는 클럽에 성공적인 전략적 홍보 활동을 위한 지구에서 개발한 오리엔테이션 및 연수를 충분히 제공한다.

라) 클럽은 각종 미디어 기자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인쇄 및 방송 매체의 직원들과 협조 체재를 구축한다. 또한 클럽 미디어 담당자는 최소한 1 년에 1 회 기자 및 해당 지구 임원들과의 회합을 갖는다.

마) 클럽은 지구에 연차 홍보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지구총재 공식 방문이나 기타 결정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한다.

연례 지구대회에서 클럽 홍보 활동을 표창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61*

지구 협의회 및 차기회장 연수회 개최 시기 변경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함 (절차요람 224 페이지)

제 15 조 지구

15.020. 지구협의회
회원 기반의 유지 및 확장; 국내외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처하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실시; 프로그램 참여 및 재정 기부를 통한 로타리재단 후원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 그리고 동기부여의 능력을 갖춘 로타리클럽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지구협의회 또는 다지구협의회가 가급적이면 매년 ~~4 월이나 5 월~~ 3 월이나 4 월 또는 5 월에 개최되어야 한다. 지구협의회는 차기총재가 책임진다. 지구협의회는 차기총재의 지시와 감독하에 계획, 실시되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본 항에 규정된 시기 이외의 시기에 지구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차기 클럽 회장과 차기 연도의 주요 지도자 역할을 맡도록 차기 클럽회장이 임명한 클럽 회원들은 반드시 초청되어야 한다.

15.030. 차기회장 연수회 (PETS)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지구에 소속된 클럽 차기 회장들에 대한 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매년 PETS, 혹은 다지구 PETS 가 개최되어야 한다. PETS 는 가급적이면 ~~3 월~~ 2 월 또는 3 월에 개최하도록 한다. 차기회장 연수회는 차기총재가 책임진다. 차기회장 연수회는 차기총재의 지시와 감독하에 계획, 실시되어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63

지구대회 대리인 규정의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함 (절차요람 225 페이지)

제 15 조 지구

15.050. 지구대회 투표

15.050.3. 대리인
클럽은 선거인 유고 시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그러한 클럽은 해당 대리인 선정에 대해 총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리인은 해당 클럽의 회원 또는 클럽이 소재한 지구 내 클럽의 회원이어야 한다. 대리인 지명은 해당 클럽의 회장과 총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리인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기타 투표권 이외에도, 불참 선거인을 대표하는 대리인으로서 투표할 자격을 갖는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10-65*

지구총재는 신입회원 연수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할 것

최근 강력하지 못한 리더십과 회원 교육의 부실 그리고 회원증강 부문에만 치우친 관심 등으로, 많은 클럽들이 신입회원이 클럽에 입회하기 전이나 입회한 후에 이들을 위한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다. 많은 신입회원들에 있어 로타리 지식과

로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가 초래되면서, 클럽에 대한 애정과 주회 참석에 대한 의무감이 결여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로타리 이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지 말고, 지구총재들로 하여금 반드시 신입회원 연수회를 개최토록 촉구한다. 동 연수회에는 클럽 입회 3 년 미만인 회원들을 참석시킴으로써, 로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훌륭한 로타리안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회원증강에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10-69

지뢰 희생자 구호 사업을 RI 및 로타리재단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포함

전세계 수 천 명의 로타리안들이 대인지뢰 희생자들의 고통을 덜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대인 지뢰는 더 이상 군사적 방어 목적이 아닌, 민간인들에 대한 공포감 조성, 경제 활동 파괴, 농작물 및 교통망 파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인지뢰 희생자의 80 퍼센트가 민간인과 어린이들로서, 특히 희생자 4 명 중 한 1 명이 5 세 이하 어린이인 실정이다.

현재 로타리안들이 대인지뢰 희생자들에게 인공 수족을 제공하고 사회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정도로는 그 대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희생자들은 돕는 것이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국제로타리 이사회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해 주도록 요청한다.

- RI 인도주의 프로젝트의 범위 안에서 대인 지뢰 희생자 구호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 로타리재단 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대인 지뢰 희생자 구호 사업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 RI 및 로타리재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인 지뢰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과 평화 증진을 위한 활동을 강화시킨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10-70

지뢰 피해자 지원 활동을 RI 와 로타리재단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것

전염병과 질병, 식수 부족, 자연 재해 그리고 기아와 빈곤 등으로 인한 인류의 재앙을 줄이기 위해 전세계 로타리안들은 지난 100 여 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많은 로타리안들이 시간과 자원을 바쳐 후원하고 있는 지뢰 희생자 프로젝트인 마인-엑스(MINE-Ex)는 인류에 대한 연민의 정과 사랑으로 운영되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날 갖가지 원인으로 인해 지뢰 희생자들이 늘어나, 이제 70 여 개 국가에서 그 피해 상황이 나날이 극심해 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지뢰 희생자들을 위한 우리들의 지원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국제로타리(RI)와 로타리재단(TRF)은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지뢰 희생자 지원 활동을 포함시킬 것을 결의한다.

국제로타리는 인류의 재앙과 불행에 맞서 오랜 세월을 용감히 싸워 왔고, 특히 최근 전세계 소아마비를 박멸하는 사업을 펼침으로써 세계인의 존경과 감사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지뢰로 인한 수많은 사상자의 속출은 인류가 인류를 위해 저지르는 만행이다. 우리가 지뢰를 제거하고 지뢰로 인한 더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인류가 인류를 위해 할 사명인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 문제를 국제로타리(RI)나 로타리재단(TRF)의 프로그램(예를 들면 평화와 분쟁 해결 연구 프로그램)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불행이 더 이상 인류를 괴롭히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로타리는 그동안 지뢰 희생자들의 사회 복귀 활동이나, 의수족 제공 등을 통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지뢰 매설은 더 이상의 전쟁 도구가 아니다. 단지, 테러리스트들이 이용하는 위협용 도구이거나, 경제나 농업을 파손하고 도로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될 뿐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뢰 희생자의 80% 가 선량한 주민들이며, 그 대부분이 어린이들이다. 특히 지뢰 희생자의 ¼은 5 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다.

그러므로, 단지 그들에게 의수족을 제공하거나,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로타리안의 지원 활동은 그들의 커다란 상처를 돌보기에는 미흡하다 아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로타리는 로타리 회원들에게 네가지 표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모두에게 공평한가? 모두에게 유익한가?(네가지 표준 제 2,4 항)를 강조하고 있으며, 사업과 전문 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국제간의 이해와 친선과 평화를 증진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국제로타리 이사회가 다음 사항을 검토해 볼 것을 요청한다:

- 지뢰 매설의 원인과 사용을 검토, 연구하고 이를 제거함으로써, 제뢰 희생자들을 줄이는데 앞장선다.
- 지뢰 희생자 지원 활동을 로타리 인도주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결정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간다.
- 로타리재단 관리위원회는 로타리재단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뢰 희생자 지원 프로그램을 채택한다.
- 국제로타리(RI)와 로타리재단(TRF)은 지뢰로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이를 알리고 발전시킨다.
- 로타리 강령에 맞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지뢰 제거 활동을 전세계 활동으로 확대시킨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10-71

로타리 평화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창설

로타리 강령은 로타리안들에게 국제간의 이해와 친선, 평화를 증진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세계 평화는 RI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로타리 평화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친선과 평화를 선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현재 70 개가 넘는 로타리 평화 지역사회가 각 로타리클럽과 지구에 의해 개발되어 선포되었다.

일련의 헌신적인 로타리 지도자 그룹은 4 회에 걸친 평화 회담을 개최하여 로타리 평화 지역사회 프로그램 및 웹사이트 개발을 논의하였으며,

로타리 평화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지속과 세계적인 인정에 필요한 정책의 윤곽을 다루었다.

본 결의안은 국제로타리 이사회가 로타리 평화 지역사회를 양성하는 새로운 로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미 선포된 로타리 평화 지역사회를 인정해 주도록 요청한다. 아울러 본 결의안은 국제로타리 이사회가 RI 회장들에게 매년 자신들의 역점 사업에 로타리 평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포함시킴으로써 로타리 강령을 강조하도록 요청할 것을 결의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10-73

세계평화를 위한 로타리안 선언문 채택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국제적인 문제점들은 국가간의 이해와, 선의 그리고 평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며, 로타리안들 역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국제로타리는 1945 년 창립 시부터 유엔을 지원해 왔으며, 세계평화를 위한 유엔과의 관계는 전세계 로타리안들이 "세계평화를 위한 로타리안 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선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는 1945 년, 국제로타리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출범한 유엔이 다음과 같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엔의 강화"를 지지하는 바이다.

첫째 –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천명하는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문 실천.

둘째 – 공기 및 수자원 정화 활동/프로그램을 통한 효율적인 환경 보호.

셋째 –모든 국가에서 환경 오염, 기아 및 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성장.

넷째 – 네 번째 로타리 강령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도구로서 국제법의 효율적인 원리와 가치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의 협력과 헌신

국제로타리 이사회에 "세계 평화를 위한 로타리안 선언문"을 로타리 강령 네 번째 항에 따른 문서로 채택하고, 로타리클럽이 자유롭게 서명하며, 세계평화를 위한 로타리 회합에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10-75

재해 지역의 신속한 구호를 위해 셀터박스의 사용 확대 방안 개발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국제적인 재해 사태는 긴급 구호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와 구호 기관의 취약점을 노출시켰다.

'쉘터박스'로 알려진 Helston-Lizard (영국) 로타리클럽 프로그램은 재해 지역의 긴급 구호를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그 유용성을 널리 입증하여 왔으며, 국제로타리에 의해 더 광범위하고 종합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모델로 간주된다.

본 결의안은 국제로타리 이사회가 재해구호 위원회에 제안하여 쉘터박스의 보다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활용을 연구 및 개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10-76

환경 문제 인식 강화

지구 온난화는 범세계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이며 국제로타리는 세계적인 인도주의 단체로서 이러한 도전에 부응하는 정책을 실시함이 마땅하다.

로타리의 가치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타격을 가장 크게 받고 있음에도, RI 는 지금까지 환경 보호 이슈를 상대적으로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국제로타리 이사회가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주요 환경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로타리안들이 이러한 인식을 인도주의 프로그램이나 사회봉사 프로그램 및 개인 생활에도 반영시키도록 장려한다.

2) 로타리클럽이나 지구가 국내외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환경 이슈에 부응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장려하고, 지침을 제공할 위원회나 태스크포스(리소스 그룹)를 구성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10-78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요청

로타리는 보건 증진, 교육 지원, 기아 완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류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조리, 난방, 보건 진료, 업무, 커뮤니케이션, 교통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 공급은 모든 사람들의 복지에 필수적이다.

석탄에 대한 의존도로 기후 악화, 환경 오염, 빈부의 격차, 정치적 불안감 조성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위험 요소들이 많아졌다.

지역사회가 에너지 공급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87*

4 대 봉사 부문에 5 번째 부문 추가: 신세대 봉사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243-244 페이지)

제5조 5대 봉사
로타리의 5 대 봉사는 로타리클럽 활동의 철학과 실질적인 골격을 이룬다.

1. 클럽봉사, 첫 번째 봉사 부문으로, 클럽이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원이 클럽 내에서 해야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직업봉사, 두 번째 봉사 부문으로, 사업과 전문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모든 직업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하며, 개인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로타리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사회봉사, 세 번째 봉사 부문으로, 클럽이 속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펼치는 클럽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4. 국제봉사, 네 번째 봉사 부문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기 위한 클럽의 모든 활동과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그들과의 서신 연락이나 독서를 통하여, 그 나라의 국민과 문화, 관습, 성취, 염원, 문제 등에 익숙해짐으로써, 국제 이해와 선의 그리고 평화를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신세대 봉사, 다섯 번째 봉사 부문으로, 리더십 개발 활동과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 봉사 프로젝트, 세계 평화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에 의해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10-94

얼리액트(EarlyAct) 클럽에 대한 공식 승인 요청

얼리액트클럽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학교,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에 대한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리더십과 시민적 자질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한다

얼리액트의 사명은 친선과 이해,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얼리액트는 로타리클럽이 스폰서하고 로타리안의 자문을 받으며, 네 가지 표준의 적용을 포함하여 로타리의 이상을 따른다.

얼리액트 클럽은 자신들이 파악한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금 마련 방법까지 계획한다

얼리액트 클럽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인터랙트클럽은 RI 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

관심 있는 로타리안들은 www.earlyact.com에서 얼리엑트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RI 는 "신 세대의 달"을 지정하고, 청소년 개발을 지원하는 로타리 활동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얼리액트는 전세계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친교와 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청소년 성폭력과 희롱 예방을 위한 표준화된 방침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공식 승인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얼리액트의 공식 승인을 RI 이사회에 요청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10-102*

인너휠을 로타리의 소중한 봉사 파트너로 인정

전세계 많은 로타리클럽들에는 로타리안들(현재 및 과거)의 여성 가족으로 구성된 인너휠 클럽이 있다.

인너휠 클럽은 자체적으로 혹은 로타리클럽과 함께 훌륭한 봉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로타리클럽과는 불가분의 헌신적인 동반자가 되었다.

두 단체의 통합된 노력은 그 효과가 클 뿐 아니라 두 단체간의 관계도 한층 돈독히 한다.

본 결의안은 국제로타리 이사회가 인너휠을 로타리의 소중한 봉사 파트너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10-110

로타리안의 파트너에게 로타리재단 프로그램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말 것

로타리재단은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나 보조금 지급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로타리안이나 로타리안의 직계 가족에게 로타리재단 프로그램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다.

로타리안과 결혼한 경우 로타리재단 프로그램 신청 자격을 상실하는 반면, 오늘날 많은 국가의 일반적인 현상인 "사실혼(de facto)" 또는 "동거(living together)" 등의 관계에 대한 부자격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 로타리재단 정책 규약 제 7.030.항 및 로타리재단 세칙 제 9.3 항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로타리재단 프로그램 신청 부자격자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1) 로타리안과 명예 로타리안의 "파트너" 그리고 국제로타리 혹은 로타리클럽 및 지구를 포함하는 로타리 단체의 직원의 "파트너" 그리고 상기 인의 직계 자손, 즉, 현재 혹은 지난 36 개월 기간 중에 "사실혼(de facto)" 또는 "동거(living together)" 관계였던 상대와 이들의 직계 자손

2) 로타리안의 배우자 또는 현재 혹은 지난 36 개월간 "사실혼(de facto)" 또는 "동거(living together)" 관계였던 상대의 직계 자손

3) 로타리안 또는 지난 36 개월 기간 중에 로타리안이었던 사람의 형제 및 자매 또는 의부 형제 및 자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24

로타리재단 관리위원회 선출 조항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함 238 페이지)

제 22 조 로타리재단

22.020.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지명하는~~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 15 명의 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관리위원 중 4 명은 전 RI 회장이어야 한다. 모든 관리위원은 재단의 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25

관리위원 임명 일정 변경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38 페이지)

제 22 조 로타리재단

22.020.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임기 시작 전년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차기 회장이 지명하는 15 명의 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관리위원 중 4 명은 전 RI 회장이어야 한다. 모든 관리위원은 재단의 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27*

회원 1 인당 회비 인상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32 페이지)

제 17 조 회비

17.030. 회비

17.030.1. 회원 1 인당 회비
모든 클럽들은 클럽 회원 수 각각에 대한 1 인당 회비를 다음과 같이 RI 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7-2008 년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미화 23 달러 50 센트, 2008-2009 년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미화 24 달러 2009-2010 년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미화 24 달러 50 센트~~ 2010-2011 년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미화 25 달러이다. 그리고 2011-2012 년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미화 25.50 달러, 2012-2013 년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미화 26 달러, 2013-2014 년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미화 26.50 달러이다. 단, 모든 클럽들은 ~~2007-2008 년도에는 최소한 미화 235 달러를, 2009-2010 년도에는 최소한 미화 240 달러를,~~ 2010-2011 년도에는 미화 250 달러를 2011-2012 년도에는 미화 255.00 달러를, 2012-2013 년에는 미화 260 달러를 그리고 2013-2014 년도에는 미화 265 달러를 최소한의 반기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회비는 규정심의회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17.030.5. RI 보관 비율
본 세칙 제 17.030.4.항의 규정에 따라 RIBI 지역에 있는 클럽들이 RI 에 보관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납부하는 1 인당 회비 금액은 매년 이사회에 의해 결정되며, 다음 연도에 이들 클럽이 납부하여야 할 1 인당 회비에 적용된다. 그러한 이사회의 결정은 전세계적으로 로타리 프로그램을 증진시키기 위한 RI 의 일반 관리비 가운데 RIBI 의 비례 부분을 비롯하여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RI 가 지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에 RI 의 용도 제한이 없는 순자산에 대한 반기당 기부금~~미화 1 달러~~으로 2010-2011 년도에 미화 1.25 달러를 2011-2012 년도에 미화 1.50 달러를 2012-2013 년도에 미화 1.75 달러를 2013-2014 년도에 미화 2.00 달러를 추가한다.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의 경험, 현재의 상황 및

예측 가능한 향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 6 년마다 검토함으로써 그러한 금액을 인상, 유지 또는 인하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38

RI 이사에게 지출된 경비를 RI 연차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31 페이지)

제 17 조 회계 사항

17.080. 보고서
사무총장은 회계 연도 종료 후 12 월말 이전에 감사필 RI 연차 보고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그러한 보고서는 회장과 차기 회장, 차차기 회장 그리고 각 이사에게 지출된 경비 변제와 그들을 대신하여 집행된 모든 지출을 각 직책별로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회장, 이사회, 국제대회, 기타 사무국의 주요 관리 및 운영 부서들의 지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들 각 항목을 본 세칙 제 17.050.1.항에 따라 채택된 예산과 비교한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 17.050.2.항에 의거 수정한 것을 첨부한다. 보고서에는 각 비용 항목별로 승인된 예산과 10 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지출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RI 의 모든 현 및 전 임원들에게 배포되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클럽에게도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규정심의회 개최 직전 연도의 보고서는 규정심의회 개최 최소한 30 일 전에 사무총장에 의해 모든 규정심의회 의원들에게 우송되어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39

모든 관리위원들의 지출 명세서를 관리위원회 보고서에 기재할 것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38 페이지)

제 22 조 로타리재단

22.060. 관리위원회 보고서
관리위원회는 재단의 각종 프로그램과 재정에 관하여 매년 1 회 이상 RI 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로타리재단 연차보고서는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차기 위원장~~ 모든 위원 개인 앞으로 지출된 경비 변제와 그들을 대신하여 집행된 모든 지출을 각 직책별로 기술하여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40

RI 회장 지명위원회 위원 수 축소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207 및 210 페이지)

제 11 조 회장 지명 및 선출

11.020. 회장 지명 위원회

11.020.1. 구성 방법
회장 지명위원회는 RI 이사 지명을 위하여 ~~34~~17 개 존에서 선출된 ~~34~~17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
(가) 짝수 연도에는 모든 홀수 번호 존에서 1 명의 위원을 선출한다;
(나) 홀수 연도에는 모든 짝수 번호 존에서 1 명의 위원을 선출한다.

11.050. 선거위원회에 위한 지명

11.050.3. 정족수와 투표
회장 지명위원회의 정족수는 ~~24~~12 명이다. 위원회의 모든 안건은 과반수 투표로 처리된다. 단, 회장 피지명자 선출의 경우, 최소한 ~~20~~10 명 이상의 위원이 해당 피지명자에게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42

이사의 자격 요건을 변경할 것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190 페이지)

제 6 조 임원

6.050. 임원 자격 요건

6.050.3. 이사
RI 이사 후보자는 후보자로 추천되기 전에 RI 지구총재의 임기를 마친 후 최소한 3 년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단, 임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이사회가 본 규정의 취지를 충족시킨다고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후보자는 후보로 추천되기 전 36 개월 동안 로타리 연수회에 최소한 2 회 이상, 그리고 국제대회에 1 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49

RIBI 존의 이사 및 회장 지명위원회 절차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제 11 조 (절차요람 제 207 페이지)

제 11 조 회장 지명 및 선출

11.020. 회장 지명위원회

11.020.1. 구성 방법
회장 지명위원회는 RI 이사 지명을 위하여 34 개 존에서 선출된 34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1.020.2. RIBI 출신 위원
RIBI 존 출신의 위원은 ~~RIBI 의 연차대회에서 소속 클럽들에 의해 또는~~ RIBI 전체 심의회가 결정한 방법 및 일시에 따라 해당 존 내 클럽들의 우편 투표로 선출된다. RIBI 총무는 그러한 위원의 명단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절차요람 제 213-217 페이지)

제 12 조 이사의 지명 및 선출

12.010. 각 존(Zone)별 이사 지명
이사의 지명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각 존에 의해 실시된다.

12.010.6. 존 내의 구역
이사회는 한 존 내에서 윤번제로 공평하게 이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존 내에 구역을 신설, 조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그러한 구역들은 거의 동등한 로타리안 수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결정한 일정에 따라 RI 이사를 지명하여야 한다. RIBI 에 소속된 클럽을 포함하는 존을 제외한 다른 존들은 존 내 클럽들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구역도 신설, 조정, 또는 폐지될 수 없다.

12.010.7. RIBI 존 출신 이사
RIBI 존 출신 이사 또는 RIBI 존 내 구역의 이사는 RIBI 심의회가 결정하는 시기에 우편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존 소속 클럽 또는 존 내의 구역에 소속되어 있는 클럽들에 의하여 지명되어야 한다. 그러한 지명자의 성명은 RIBI 총무를 경유하여 사무총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020.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한 이사 피지명자 및 교체 이사 피지명자 선출

12.020.1. 지명위원회 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

이사 피지명자 및 교체 이사 피지명자는 RIBI 존 및 존 내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 절차에 따라 선출된다. 세칙 규정이나 후보자가 지명될 수 있는 존 내의 지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비공식적인 이해에도 불구하고, RIBI 지구 및 비 RIBI 지구로 구성되어 있는 존을 제외한 모든 존의 지명위원회는 전체 존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 존이 2 개 이상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존 내 각 구역의 지구 과반수가 지구대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여, 특정 구역 출신의 이사 선출에 동의한 경우에, 지명위원회 위원은 이사가 지명될 특정 구역 내 지구들에 의하여 선출된다.

지명위원회 위원 선출에 대한 그러한 동의가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지구총재는 선출 전년도의 3 월 1 일까지 사무총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존을 구성하고 있는 지구들이 변경될 경우, 그러한 동의는 무효가 되지만,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의 한 구역 내 지구 과반수가 지구대회 결의안을 채택하여 그 동의를 무효로 하고, 지구총재가 그러한 무효 결정에 대하여 사무총장의 확인을 받지 않는 한, 그러한 동의는 계속 유효하다.

12.020.2. RIBI 내의 구역 및 비 RIBI 내의 구역으로 구성된 존의 지명위원회 절차
RIBI 내의 구역 및 비 RIBI 내의 구역으로 구성된 존의 이사 피지명자 및 교체 이사 피지명자 선출은 RIBI 에 속하지 않는 구역의 지명위원회 절차에 따라 선출된다. 비 RIBI 내의 구역의 지명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구역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이 후 조항들의 번호는 순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함)

12.030. 우편 투표 절차

본 세칙 제 12.020.항에 따라 이사 피지명자를 우편 투표로 선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2.030.1. 투표

본 세칙 제 12.020.1. 또는 12.020.2.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가 한 구역 내의 각 지구 출신들로 구성되는 존을 제외하고는 존 내의 모든 클럽들이 투표에 참여한다. 그러한 존에서는 RI 이사가 지명되기로 되어 있는 구역 내 클럽들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51*

총재 임무 변경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227-228 페이지)

제 15 조 지구

15.090. 총재 임무
총재는 지구의 RI 임원으로서, 이사회의 전반적인 지휘와 감독 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총재는 지구 소속 클럽들을 지도하고 감독하여 RI 강령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 지구총재는 지구 및 클럽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이사회가 개발한 지구 리더십 플랜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한다. 지구총재는 지구 내 클럽들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구총재는 효율적인 클럽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전, 현, 그리고 차기 지구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지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총재는 다음의 지구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차) 클럽 증강에 필요한 권장 사항과 함께 클럽 상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차기총재가 선출되는 즉시, 그리고 늦어도 국제협의회 이전에 차기총재에게 제공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54

총재 피지명자 선출 조항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19-220 페이지)

제 13 조 총재 지명 및 선출

13.020. 총재 지명 절차

13.020.6. 지명 통보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선출한 후보자를 지명위원회 폐회 후 24 시간 이내에 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후 총재는 지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72 시간 이내에 지구 클럽들에게 피지명자의 성명과 소속 클럽을 발표한다. 지구 클럽들에 대한 발표는 서신이나 e-메일, 또는 팩스 등의 서면 발표여야 한다.

13.020.8. 도전 후보자
7 월 1 일을 기준으로 1 년 이상 활동한 모든 클럽은 총재 피지명자에 대한 도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7 월 1 일을 기준으로 1 년 미만 활동한 클럽의 경우라도, 후보자가 클럽 회원이면 도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그러한 도전 후보자는 기히 지명위원회에 정식으로 추천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도전 후보자의 명단은 클럽 주회에서 채택한 결의로 제출되어야 한다. 클럽은 그러한 결의를 총재가 정하는 마감일까지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마감일은 지구총재가 총재 피지명자 선출 발표로부터 14 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13.020.9. 도전 후보자에 대한 동의
총재는 상기 조항에 따라 추천된 모든 도전 후보자의 명단을 RI 가 정한 양식으로 모든 클럽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재는 또한 도전에 동의하는 클럽이 있는지도 조회하여야 한다. 도전에 동의하기로 한 클럽은 주회에서 채택한 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의서는 총재가 정한 마감일까지 총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지구 내 해당 연도의 7 월 1 일을 기준으로 1 년 이상 활동한 클럽 중 최소한 5 개의 다른 클럽 또는 7 월 1 일을 기준으로 1 년 이상 활동 한 지구 클럽 총 수의 10 퍼센트 이상 (두 가지 중 클럽 수가 더 많은 경우를 적용)의 동의를 받은 그리고 그러한 클럽의 결의서가 클럽 세칙에 따라 주회에서 채택되었다고 지구총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도전 후보자만이 도전 자격을 갖는다.

13.020.11. 도전 후보자의 지명
마감일 이전에 도전 후보자 지명서가 접수되었으며, 마감일 후 15 일 동안 효력이 지속될 경우, 지구총재는 이를 지구 클럽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보에는 도전 후보자의 명단과 자격 요건을 포함하여 만일 도전 후보자가 지구총재가 정한 날짜까지 자격을 갖출 경우 그러한 후보자를 상대로 우편 투표 또는 지구대회 투표가 실시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55

총재 피지명자 도전 후보자 조항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219 페이지)

제 13 조 총재 지명 및 선출

13.020. 총재 지명 절차

13.020.8. 도전 후보자
7 월 1 일을 기준으로 1 년 이상 활동한 모든 클럽은 총재 피지명자 후보자를 지명위원회에 추천하였을 경우 그 후보자를 총재 피지명자에 대한 도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7 월 1 일을 기준으로 1 년 미만 활동한 클럽의 경우라도, 후보자가 클럽 회원이면 도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그러한 도전 후보자는 기히 지명위원회에 정식으로 추천되어야 한다. 도전 후보자의 명단은 클럽 주회에서 채택한 결의로 제출되어야 한다. 클럽은 그러한 결의를 총재가 정하는 마감일까지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마감일은 지명위원회의 총재 피지명자 선출 발표로부터 최소한 2 주 후가 되어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57

지구총재 도전 후보 규정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18 페이지)

제 13 조 총재 지명 및 선거

13.020. 총재 지명 절차

13.020.11. 도전 후보자의 지명
마감일 이전에 유효한 도전 후보자 지명서가 접수되면 마감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지구총재는 이를 지구 클럽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보에는 도전 후보자의 명단과 자격 요건, 도전 클럽 및 이에 동의하는 클럽들의 명단을 포함하여 그러한 후보자를 상대로 우편 투표 또는 지구대회 투표가 실시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13.020.12. 유효한 도전 후보자 지명의 실패
유효한 도전 후보자 지명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총재는 지구 지명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를 총재 피지명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총재는 지구 소속 모든 클럽들에게 15 일 이내에 총재 피지명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59

우편 투표 서식의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220 페이지)

제 13 조 총재 지명 및 선출

13.040. 우편 투표 서식
총재는 이사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지구 지명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명단이 기재된 투표 용지를 준비하여야 한다. 지구 지명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명단 다음에 총재에게 접수된 후보자들의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기입한다. 후보자가 2 명 이상일 경우, 투표는 단일 이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총재는 모든 투표 위원회 위원들의 서명이 포함된 기명 투표 용지를 총재에게 반송하여야 한다는 안내서와 함께 투표 용지 1 매를 모든 클럽에게 우송하여야 한다. 투표 용지는 총재가 정한 마감일까지 반송하여야 한다. 그러한 마감일은 총재가 투표 용지를 우송한 날부터 15 일 이후 30 일 이내가 되어야 한다. 각 투표 용지는 한 표로 간주한다. 지구총재는 각 클럽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 수만큼의 투표 용지를 각 클럽에 우송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61

총재 특별 선거에 관한 조항을 개정할 것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222 페이지)

제 13 조 총재 지명 및 선출

13.070. 특별 선거
지구가 총재 피지명자를 선출하지 못했거나 총재 피지명자가 선출 자격을 상실한 경우 혹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지구가 국제대회 연차 임원 선출 전까지 다른 피지명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지구총재는 본 세칙 제 13.020.항에 따라 지명 절차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제대회에서 선출된 지구총재 피지명자가 최소한 국제협의회를 3 개월 남겨놓고, 자격을 상실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지구총재는 본 세칙 제 13.020.항에 따라 지명절차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지 이사회는 지명된 로타리안을 차기총재로 선출하여야 한다. 그 이후 만약 차기총재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이사회는 본 세칙 제 15.070.항에 따라 자격있는 로타리안을 선출하여 공석을 메우도록 한다. 차기총재 또는 총재 피지명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지구는 지명절차에 따라 그 후임자를 적법하게 선출하고 해당 후임자의 동의 하에 그 공석을 메울 수 있다. 단, 해당 후임자는 국제대회나 이사회가 실시하는 필요한 선거를 거쳐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62

임원 지명 조항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206 페이지)

제 10 조 임원의 지명 및 선출 일반 규정

10.040. 지명 부적격자

10.040.1. 지명위원회
서면으로 동의한 지명위원회의 위원, 교체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 (선출 여부에 관계없이),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나중에 사임하는 후보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 등은 해당 지명위원회가 활동하는 연도 동안에는 임원으로 지명될 수 없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64

선거 이의 제기 검토 절차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206 페이지)

제 10 조 임원의 지명 및 선출 일반 규정

10.060. 선거 운동, 여론 조사 및 유세 지원

~~10.060.1. 금지된 활동~~
최적격 로타리안들을 RI 선출직 임원으로 선출하기 위해, 선출 과정에서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 운동, 여론 조사, 유세 지원 혹은 기타의 활동은 어느 것도 금지된다. 로타리안들은 RI 의 선출직을 위하여 선거 운동, 여론 조사 또는 지원 유세를 하거나 자신을 대신하여 사람들이 그러한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상대방을 대신하여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도 아니된다. 이사회가 명백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타리안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클럽이나 클럽 회원에게 전자매체와 커뮤니케이션을 비롯, 책자, 자료집, 서신, 기타 인쇄물을 배포 또는 회람시킬 수 없다. 후보자가 어떤 금지된 활동이 자신을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후보자는 즉각 그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러한 행동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10.070. 선거 검토 절차

~~10.060.2.~~10.070.1. 이의 제기
클럽의 서면 이의 제기가 없는 한, ~~본 항에 근거하는~~ RI 선출직 임원 선출 절차 또는 RI 선거의 결과와 관련된 이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 제기는 최소한 5 개 이상의 다른 클럽들의 동의나 현 RI 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거 서류를 첨부한 모든 이의 제기는 투표 결과 발표 후 21 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지구, 존 또는 지역대회에 참석한 회장 대리도 충분한 규정 위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회장 대리는 그러한 증거를 사무총장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후 조항들의 번호는 순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함)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64A*

선거 이의 제기 조항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206 페이지)

10 조 임원의 지명 및 선출 일반 규정

10.060. 선거 운동, 여론 조사 및 유세 지원

10.060.3. 이사회 심의
이사회는 그러한 이의 제기를 신중히 심의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이의 제기를 기각하거나, 선출직 후보자를 실격시키거나 또는/동시에 향후 RI 선출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실격시키거나, 기타 이사회가 공평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후보자의 자격을 실격시키려면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실격 조치에 대한 해당 RI 직책과 기간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사회는 본 세칙 제 10.060.1 항을 위반하는 로타리안들에 대해 공평하고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한다. 이사회의 결정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신속히 전달되어야 한다.

10.060.4. 지구의 반복적인 이의 제기
본 세칙 및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조항에도 불구하고,
(가) 제 10.060.2.항에 의거한 총재 피지명자 선출 이의 제기 건수가 지난 5 년간 2 건 이상인 지구에 대해, RI 이사회는 RI 세칙 및 선거 이의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 조치들을 모두 혹은 일부 취할 수 있다:
1. 피지명자와 특정 후보자 혹은 모든 후보자들의 자격을 실격시키고, 지구 전총재 중에서 1 명을 선출하여 지구총재로 봉사하게 한다;
2. 선거 과정에 부적절하게 간섭하였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지구총재나 차기총재를 해당 직책에서 해임시킨다; 그리고
3. 선거 과정에 부적절하게 간섭하였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전총재에 대해 전총재로서의 자격 상실을 공표한다;

(나) 총재 피지명자 선출 이의 제기 건수가 지난 5 년간 3 건 이상인 지구에 대해 RI 이사회는 해당 지구를 해산, 소속 클럽들을 주변 지구에 편입시킬 수 있다. 본 세칙 제 15.010. 항은 본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후 조항들의 번호는 순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함)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10-165

로타리 제 2 모토 수정

국제로타리는 2004 년 규정심의회, 결의안 04-271 을 통해 로타리 제 2 의 모토인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거두어 들인다"의 영문 표기를 "He Profits Most Who Serves Best"에서 "They Profit Most Who Serves Best"로 변경시켰었다.

그리고, 2007 규정심의회 결의안 07-109 는 RI 의 제 2 모토가 "직업봉사는 개인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철학"에 근거한 것임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 모토의 영문 표기 가운데 “he/she” 보다는 “one”이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을 모두 지칭하는 대명사이므로,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거두어 들인다”의 영문 표기를 “One Profits Most Who Serves Best”로 다시 변경해 줄 것을 결의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67*

지구 경계 변경 조항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223 페이지)

제 15 조 지구

15.010. 지구 창설
이사회는 클럽들을 지구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회장은 그러한 지구의 목록과 그 경계 구분을 발표하여야 한다. 그러한 결정은 이사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이사회는 ~~30~~33 개 미만의 클럽이나 ~~1,000~~1,200 명 미만의 로타리안을 보유한 지구의 경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0~~33 개 이상의 클럽이나 ~~1,000~~1,200 명 이상의 로타리안을 보유한 지구는 해당 지구에 소속되어 있는 클럽들의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 지구 경계를 변경할 수 없다. 이사회는 관련 지구의 총재 및 소속 클럽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이들에게 제안된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준 후에 지구 경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사회는 지구 경계 설정에 지역 분포, 지구 성장의 잠재력, 문화, 경제, 언어, 기타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로타리 세칙 제 15.010.항에 따른 잠정 조항
2010 규정심의회가 제정안 10-167 을 채택하였지만, 2012 년 7 월 1 일까지는 클럽 수 30 개 또는 지구 로타리안 수 1,000 명이 모두 인정됨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68

로타리재단 스튜어드십을 위반한 클럽의 자격을 정지
또는 종결할 것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184 페이지)

제 3 조 회원 자격 종결, 정지 및 탈퇴

3.030. 이사회의 클럽 징계,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종결 권한

3.030.3. 재단 스튜어드십 위반에 따른 자격 정지 및 종결
클럽 회원이 로타리재단 기금을 유용하거나, 로타리재단 스튜어드십을 위반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클럽의 국제로타리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종결시킬 수 있다.

(추후 조항들의 번호는 조정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69

자격 정지 클럽에 대한 조항 명시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187 페이지)

제 3 조 회원 자격 종결, 정지 및 탈퇴

3.030. 이사회의 클럽 징계,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종결 권한

3.030.5. 자격 정지 기간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된 클럽을 복권시킬 수 있다. 미납된 회비나 기타 RI 에 대한 재정적 의무, 혹은 지구 기금에 대한 기부금이 완불된 경우;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회원에 대한 위법 주장이 제기된 경우 클럽이 적절히 대처했다는 증거가 제시된 경우; 기타 징계 사유가 적절하게 해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나 6 개월이 지나도록 징계 사유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는 해당 클럽을 종결시킨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72

회계 감사 위원회 조항 수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230 페이지)

제 16 조 위원회

16.110. 회계 감사 위원회
이사회는 회계 감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재정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위원 ~~6~~7 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매년 현 이사 중에서 3 명을 그리고 로타리재단 관리위원회가 매년 현 관리위원 중에서 2 명을 임명하여 위원으로 활동하게 한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나 재단 관리위원이 아닌 2 명을 6 년 임기로, 3 년마다 1 명씩 임명하여 활동하게 한다. 회계 감사 위원회는 RI 및 로타리재단 재정 보고서, 외부 회계 감사, 내부 출납 관리 제도의 통제, 내부 감사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모든 재정 문제들을 감사하고 이를 전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시간과 장소에서 연 3 회까지 회합을 갖는다.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회장 또는 이사회가 결정하여 통보한 시간과 장소에서 추가 회의를 가질 수 있다.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이나 회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회 연락 이사로 봉사한다. 이 위원회는 본 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이사회 및 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국제로타리 세칙 제 16.110.항에 대한 잠정 조항
2007 년 7 월 1 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가 아닌 위원 3 명이 임명된다. 1 명은 2 년 임기로 2009 년 6 월 30 일자로 그 임기가 끝난다. 그리고 1 명은 4 년 임기로 2011 년 6 월 30 일자로 그리고 다른 1 명은 6 년 임기로 2013 년 6 월 30 일자로 그 임기가 끝난다. 2010 규정심의회가 제정안 10-172 를 통과시킴으로써 상기 제 16.110.항이 채택될 경우, 본 조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부터 적용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73

전략 계획 위원회 조항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230 페이지)

제 16 조 위원회

16.100. 전략 계획 위원회
이사회는 위원 6 명으로 구성되는 전략 계획 위원회를 구성한다. ~~각~~ 위원 4 명의 임기는 6 년 단임으로 하되, ~~격~~ 3 년마다 2 명씩 임명하고, 2 명은 매년 현 이사로 임명한다. 전임 회장이나 현 관리위원은 동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는 장기 전략 수립, RI 프로그램 및 활동, 재정 관리 등에 경험이 있는 로타리안들로 균형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동 위원회는 회장이나 이사회,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통보한 날짜와 장소에서 1 년에 1 회 회합을 가지며, 회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장이나 이사회가 정하여 통보한 날짜와 장소에서 추가로 회합을 갖는다. 전략 계획 위원회는 이사회가 검토할 전략을 개발하거나 건의, 개정하고; 최소한 3 년에 한 번씩 로타리안들과 클럽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전략과 관련된 제안이나 자문을 이사회에 제출하며; 차기회장과 더불어 장래의 프로그램이 수립된 전략과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하며, 기타 이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조만간 로타리 확대가 예상되는 국가를 포함하여 각 대륙의 예비 로타리안들의 숫자 변화를 염두에 두어 이러한 변화가 각 존에 끼칠 영향을 예상하여야 한다.

~~16.100.1 연락 위원회.~~
~~회장은 2 년 임기의 연락 위원을 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16.100.항에 관련된 임시 규정
2010 규정심의회가 제정안 10-173 을 통과시킴으로써 상기 제 16.100.항이 채택될 경우, 본 조항들은 이사회가 정하는 날짜부터 발효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76*

인터랙트 위원회를 상임 위원회로 개설할 것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229 페이지)

제 16 조 위원회

16.010. 위원 수와 임기
이사회는 통신, 정관 및 세칙, 국제대회, 지구 재조정, 선거 심사, 재정, 로타랙트, 그리고 인터랙트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RI 에 크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타 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와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통신 위원 6 명, 이 중 2 명은 3 년 임기로 매년 임명; (2) 정관 및 세칙 위원 3 명, 이 중 1 명은 3 년 임기로 매년 임명; 단, 규정심의회 연도에는 직전 위원 1 인을 4 년 임기로 추가, 전체 위원 수를 4 명으로 한다; (3) 국제대회 위원 6 명, 이 중 1 명은 연차 국제대회 주최국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4) 지구 재조정 위원 3 명, 이 중 1 명은 3 년 임기로 매년 이사회가 임명; (5) 선거 심사 위원 6 명, 각 위원의 임기는 3 년이며, 매년 2 명의 위원 임명; (6) 재정 위원 8 명, 위원 6 명의 임기는 3 년이며, 매년 2 명의 위원 임명, RI 재무 그리고 이사회가 선출한 이사 1 명은 투표권이 없는 위원으로서 임기는 1 년; (7) 로타랙트 위원 6 명, 각 위원의 임기는 3 년이며, 매년 2 명의 위원을 임명하되 최소한 3 명 이상의 로타랙터를 위원으로 추가; (8) 인터랙트 위원 6 명, 각 위원의 임기는 3 년이며, 매년 2 명의 위원 임명.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각 위원회 위원 수와 임기는 아래 16.050 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사회는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정하되, 매년 위원회 위원들의 연속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10-182

'1923 년 사회봉사 성명서'의 첫 번째 원칙을 봉사 철학의 정의로 규정할 것

'결의안 23-34' 이 2007 로타리 정책 규약에서 삭제되었다.

1923 년 사회봉사 성명서에 명기된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으로 로타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욕망과 남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의무 및 그에 따른 충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시키는 삶의 철학이다. 이러한 철학은 바로 '초아의 봉사'이며, 이는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거두어 들인다"는 실질적인 윤리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다.

'결의안 23-34'는 1923 년 세인트 루이스 국제대회에서 채택된 이래 수 차례 개정되어 왔다. 최근에는 "1923 사회봉사 성명서"가 2007 절차요람에 수록되어 있다.

당초 '결의안 23-34' 는 국제로타리와 로타리클럽이 로타리 강령에 기초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로타리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성명서의 일부분이 로타리의 현재 정책이나 활동에 부적절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의안 23-34 의 첫 번째 원칙은 오늘날의 로타리안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이 조항은 로타리안의 활동을 가이드하는 철학으로 영원히 보존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국제로타리 이사회가 이 원칙을 봉사 철학에 대한 정의로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83

공식 잡지 인터넷 구독 승인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237 페이지)

제 20 조 공식잡지

20.020. 구독료

20.020.2. 구독 의무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클럽 회원들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공식잡지의 유료 구독자가 된다. 클럽은 회원들로부터 구독료를 수금하여 이를 회원을 대신하여 RI 에 송금하여야 한다. 각 로타리클럽은 로타리 잡지를 책자로 구독할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구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86

공식잡지의 공동 구독을 인정할 것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37 페이지)

제 20 조 공식잡지

20.020. 구독료

20.020.2. 구독 의무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클럽 회원들은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공식잡지의 유료 구독자가 된다. 2 명의 로타리안이 같은 주소에 거주할 경우 공동 구독할 수 있다.
클럽은 회원들로부터 구독료를 수금하여 이를 회원을 대신하여 RI 에 송금하여야 한다.

20.030. 구독 신청

20.030.1. 구독 의무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국가 클럽 회원들은 RI 공식잡지나 이사회가 승인한 지역 로타리 잡지 중 1 부를 의무적으로 구독하여야 한다. 2 명의 로타리안이 같은 주소에 거주할 경우 공동 구독할 수 있다. 회원들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계속 정기 구독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51 페이지)

제 14 조 로타리 잡지
제 1 항 의무 구독. 본 클럽이 국제로타리 세칙에 따라 국제로타리 이사회에 의해 본 조항 규정 이행을 면제 받지 않는 한, 본 클럽의 모든 회원들은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공식잡지나, 국제로타리 이사회가 본 클럽을 위하여 승인하여 지정한 잡지를 유료 구독하여야 한다. 2 명의 로타리안이 같은 주소에 거주할 경우 공동 구독할 수 있다. 구독은 6 개월 단위로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계속되어야 하며, 회원 자격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해당 6 개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계속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90*

RI 세칙에 여행 규정 조항 신설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235 페이지)

제 17 조 회계 사항

17.090. 여행
RI 또는 로타리재단의 경비로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 현) 직위나 여행 목적과 관계없이 (단, 회장, 차기회장, 이사, 재단 관리위원장, 재단 관리 위원 그리고 사무총장 등과 이들의 파트너는 예외로서) RI 또는 재단의 여행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저렴한 항공권이 발급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비가 환불된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여행 일정을

변경할 경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여행자 본인이 부담한다. 회장, 차기회장, 로타리재단 관리위원장 그리고 사무총장 등과 이들의 파트너는 재임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비즈니스 클래스나 일등석으로 여행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비즈니스 클래스나 일반석으로 여행한다. 현 이사나 관리위원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비즈니스 클래스나 일등석으로 여행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10-191

콤리 뱅크에 RI 역대 회장 문서를 보관할 것

폴 해리스는 1912 년부터 1947 년까지 콤리 뱅크에서 거주하였다. 콤리 뱅크는 국제로타리 초대 지도부 최초의 국제 회합 장소이기도 하다. 폴 해리스 생전의 국제로타리 회장들은 대부분 콤리 뱅크를 방문하였다.

콤리 뱅크는 비벌리 역사 보존 지구에 위치해 있으며, 로타리안들이 이사진으로 있는 비영리 재단의 소유이다. 폴 앤드 진 해리스 홈 재단의 사명은 이 곳을 보수, 복원하여 전세계 로타리안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콤리 뱅크에 국제로타리 전 회장들의 문서 및 기념품들을 보관하면 차세대들이 로타리의 역사에 관해 배울 수 있게 된다.

폴 앤드 진 해리스 홈 재단은 미 국세청으로부터 501(C)(3) 재단, 일리노이 주정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주택 융자금 납부와 복구에 필요한 기부금이 감소하였다. 콤리 뱅크를 안전하고 유용한 건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6 년부터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 로타리안들은 국제로타리 탄생지의 보존을 원한다. 로타리 탄생지 복구에 대한 의지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로타리 역대 회장들의 문서를 콤리 뱅크에 보관할 것을 결의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198

규정심의회에 최대 3 명의 특별 의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RI 회장에게 권한 부여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196 페이지)

제 8 조 규정심의회

8.010. 규정심의회 의원

규정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투표권이 있는 의원과 투표권이 없는 의원으로 구성된다:

8.010.7. 특별 의원

회장은 규정심의회의 투표권이 없는 규정심의회 특별 의원을 최고 3 명까지 임명한다. 이들은 본 세칙 제 8.100.항에 규정된 의무와 책임을 지며, 규정심의회 의장의 지시 하에 봉사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203*

입법안 제안자가 입법안의 취지 및 효과를 설명할 것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193 및 195 페이지)

제 7 조 입법 절차

7.037. 정식으로 제안된 입법안: 하자 있는 입법안

7.037.1. 정식으로 제안된 입법안

다음과 같은 입법안들은 정식으로 제안된 입법안이다:

(가) 세칙 제 7.035.항에 규정된 마감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전달되는 경우; 그리고

(나) 입법안 제안자에 관한 세칙 제 7.020.항의 조건에 맞는 경우; ~~그리고~~

(다) 입법안을 클럽이 제안할 때, 지구 승인에 관한 세칙 제 7.030.항의 조건에 맞는 경우; 그리고

(라) 입법안 제안자는 제기된 문제나 이슈를 확인하고 제안된 입법안이 이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에 대한 입법안의 취지와 목표를 500 자 미만으로 기술하여 제출해야 한다.

7.050. 제안된 입법안에 대한 이사회 심사

7.050.5. 제안된 입법안 공표

RI 사무총장은 규정심의회 소집 연도의 9 월 30 일 이전까지 정식으로 제안된 모든 입법안의 사본 10 부를 입법안 각각에 대한 취지 및 효과와 함께 지구총재에게 우송하고, 모든 규정심의회 대의원과 전직 이사들, 그리고 송부를 요청한 클럽 총무에게 사본 1 부씩을 각각 우송하여야 한다. 제안된 입법안들은 로타리 월드 와이드 웹 사이트를 통해서도 입수될 수 있어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205

규정심의회 결정 정지 규정을 개정할 것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00페이지)

제 8 조 규정심의회

8.140. 규정심의회 결정

8.140.4. 규정심의회 결정의 정지
클럽들의 유표 투표수 가운데 최소한 ~~10~~5 퍼센트를 대표하는 클럽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양식을 제출할 경우, 그 입법안에 대한 규정심의회의 결정은 정지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208

대의원의 규정심의회 참가 회수를 3 회로 제한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196 페이지)

제 8 조 규정심의회

8.010. 규정심의회 의원
규정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투표권이 있는 의원과 투표권이 없는 의원으로 구성된다:

8.010.1. 대의원
본 세칙 제 8.050., 8.060. 및 8.070.항의 규정에 따라, 각 지구 클럽들은 1 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소속 지구가 없는 클럽은 편리한 지구를 지정하여 그 대의원이 클럽을 대표하도록 한다. 대의원은 투표권이 있는 의원이다. 로타리안들은 대의원 자격으로 규정심의회에 3 회까지만 참가할 수 있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210

지구대회 대의원 선출 규정 수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198 페이지)

제 8 조 규정심의회

8.060. 지구대회에서의 대의원 선출

8.060.3.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규정심의회의 대의원이 된다. ~~교체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는 최고 득표자가 교체 대의원이 된다. 교체 대의원은 선출된 대의원이 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대의원으로 봉사한다.~~ 만약 후보자가 단 2 명일 경우,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후보자가 교체 대의원이 되며 대의원이 봉사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봉사한다. 만약 후보자가 2 명을 초과할 경우, 투표는 단일 이양식으로 이루어지며,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대의원으로, 그리고 두 번째 득표자가 교체 대의원으로 선출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211

규정심의회 대의원 지명 조항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198 페이지)

제 8 조 규정심의회

8.060. 지구대회에서의 대의원 선출

8.060.5. 클럽 대의원 지명
후보자를 지명한 클럽이 후보자의 소속 클럽이 아닌 경우, 지명이 수락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소속 클럽이 그러한 지명을 서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그러한 서면 승인서에는 클럽 회장과 총무가 서명하여야 한다.

8.070. 우편 투표에 의한 대의원 선출

8.070.3. 클럽 대의원 지명
후보자를 지명한 클럽이 후보자의 소속 클럽이 아닌 경우, 지명이 수락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소속 클럽이 그러한 지명을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서면 동의서에는 클럽 회장과 총무가 서명하여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0-217

RI 국제대회 대의원 좌석 규정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05 페이지)

제 9 조 국제대회

9.140. 대의원 좌석
투표가 필요한 본회의에는 자격심사 위원회가 정식 확인한 대의원 수와 동일한 좌석이 대의원 전용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입법안 찬반 투표 결과

입법안 번호	찬성표	반대표	총 투표수	입법안 번호	찬성표	반대표	총 투표수
10-01	289	216	505	**10-138**	498	15	513
10-05	309	179	488	**10-139**	504	13	517
10-06*	430	85	515	**10-140**	346	167	513
10-07	431	76	507	**10-142**	378	135	513
10-09	321	178	499	**10-149**	435	54	489
10-11	436	68	504	**10-151***	382	126	508
10-21	320	189	509	**10-154**	300	185	485
10-23*	297	208	505	**10-155**	263	242	505
10-27	310	201	511	**10-157**	418	90	508
10-40	283	231	514	**10-159**	372	127	499
10-41	353	153	506	**10-161**	429	67	496
10-50	284	229	513	**10-162**	349	135	484
10-52	307	193	500	**10-164**	464	33	497
10-53*	475	28	503	**10-164A***	440	60	500
10-56*	437	77	514	**10-165**	352	129	481
10-59	337	165	502	**10-167***	302	193	495
10-61*	423	87	510	**10-168**	469	35	504
10-63	372	136	508	**10-169**	454	29	483
10-65*	264	237	501	**10-172**	478	22	500
10-69	334	171	505	**10-173**	483	15	498
10-70	352	154	506	**10-176***	343	162	505
10-71	405	101	506	**10-182**	444	66	510
10-73	395	109	504	**10-183**	266	238	504
10-75	361	148	509	**10-186**	257	244	501
10-76	284	231	515	**10-190***	337	171	508
10-78	307	204	511	**10-191**	440	56	496
10-87*	263	250	513	**10-198**	408	99	507
10-94	306	207	513	**10-203***	421	79	500
10-102*	303	210	513	**10-205**	285	214	499
10-110	360	136	496	**10-208**	366	141	507
10-124	464	45	509	**10-210**	417	84	501
10-125	453	54	507	**10-211**	287	201	488
10-127*	416	98	514	**10-217**	426	65	491

규정심의회 결의에 대한 반대 의사 제출 양식

규정심의회에서 채택된 입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본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입법안이 2 건 이상인 경우, 해당 입법안마다 각각 1 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일은 2010 년 8 월 30 일이며, 우송처는 에반스톤 세계본부입니다.**

1) **반대하는 입법안**: 본 클럽은 정기 주회에서, 2010 년도 규정심의회가 채택한 다음 입법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0- _____

2) **클럽 투표 수**: 모든 클럽은 최소한 1 표의 투표권을 갖습니다. 회원수가 25 명이 넘는 클럽들은 추가 회원 25 명마다 1 표씩 또는 그 과반수에 대하여 1 표의 추가 투표권을 갖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클럽 회원수	투표 수
1-37	1
38-62	2
63-87	3
88-112	4

클럽회장인 본인은, 아래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2010 년 1 월 1 일자, 클럽 회원(명예회원 제외) 수에 따라 본 클럽의 투표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_____ 표

일자: _____ 클럽 회장: _____
(서명)

_____
(성명: 정자 기입)

_____ 로타리클럽 지구번호 _____

반송처:
General Secretary
c/o Council Services Section
One Rotary Center
1560 Sherman Avenue
Evanston, Illinois 60201 USA

마감일:2010 년 8 월 30 일

Fax: 847-556-2123
e-메일: CouncilServices@rotary.org